

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

시행: 2024. 3. 6.

제1조(목적)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 총장, 현직 총장 및 총장 예정자의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임 총장이라 함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그 임기를 마친 자를 말한다.
2. 현직 총장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자를 말한다.
3. 총장 임용 예정자라 함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차기 총장으로 선임된 임용 예정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의 예우에 관한 사항 중 제5조(책임강의시간) 및 제6조(출장비)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전임 총장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예우) ① 전임 총장은 본교 교무위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.

- ② 총장 임기 종료시 「교직원 퇴직 및 근속기념품 지급 규정」 제3조 제1호 제나목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총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직 총장에게 사택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원활한 총장직 인수를 위하여 총장 임용 예정자에게 업무공간, 차량과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5조(책임강의시간) 전임 총장의 책임강의시간은 부총장 책임강의시간에 준하되, 총장 임기만료 후 1년간은 책임강의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출장비) 전임 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본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

제7조(장례규정) 전임 총장이 사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으로 장례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) 본 규정은 본 규정 시행 당시 전임총장의 신분을 갖는 교원에게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